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보조 및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301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보조	3
2.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1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3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1. 7.
- (3) 회 부 일 : 2025. 1.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보루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후 병상 가동률이 현재까지 회복되고 있지 못해 올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지역에서 수요가 있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17조제5항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보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1)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²⁾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조금 등)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7조(보조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u>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⑤ (생략)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주체로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³⁾.

□ 또한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⁴⁾.

-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중

*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발생 규모·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건강 증진·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⁵⁾)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통한 세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나아가 지역격차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⁶⁾을 감안할 때,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 보건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것으로 보임.

- 2025년 2월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은 총 9개소임.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해당지역 소재 지방의료원 현황 >

시·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총 89지역)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총 9개소)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대구의료원(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의료원(삼척시) 영월의료원(영월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공주의료원(공주시)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를 겪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체 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지자체의 자치재정 악화와 지역격차 심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2020. 2.).

시·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총 89지역)	인구감소지역(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총 9개소)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남원의료원(남원시) 진안군의료원(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강진의료원(강진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안동의료원(안동시) 울진군의료원(울진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및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를 바탕으로 작성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의 주체이며,

현행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주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지역보건의료 여건의 개선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지역 보건의료의 확충과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의료기관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9개소) 모두 이와 같은 지역 의료기관 지원 관련법률의 적용을 받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책임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등에 포함되어 지원대상에 해당됨.

<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별 지역 의료기관 지원 관련법률 적용 현황 >

시·도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소재 지방의료원 (총 9개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책임의료기관(지역)	성장촉진지역
대구(1)	대구의료원(서구)		○	
강원(2)	삼척의료원(삼척시)	○	○	○
	영월의료원(영월군)	○	○	○
충남(1)	공주의료원(공주시)	○	○	
전북(2)	남원의료원(남원시)	○	○	○
	진안군의료원(진안군)	○		○
전남(1)	강진의료원(강진군)	○		○
경북(2)	안동의료원(안동시)		○	○
	울진군의료원(울진군)	○		○

*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고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s://rhs.mohw.go.kr/>),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를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지원 중임.

동법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구별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동법 제17조의 취지, 재정지원의 효과성 측면 등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심혈관·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인력, 의료서비스의 품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필수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

고 의료시설 및 인력 확충과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9조(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정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 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개정안의 내용

-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후단 삭제>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이하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을 설립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 제7조(사업) ① ----- -----. 1. (현행과 같음) 2. 공공보건의료사업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조사하는 제도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국
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청사 등의 신·증
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 관계 사업, 지역 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
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
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
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
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④ (생략)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생략)

□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 의료서비스 및 재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병원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편익이 산정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⁷⁾,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의료원이 보다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7) 김진환·정백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건사회연구 44(3), 2024. 등

□ 다만, 예비타당성제도의 취지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는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동법 제38조제2항제10호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근거로 하여 최근 서부산의료원, 대전의료원 및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별도 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현행법 하에서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며,

정부가 경제성 외에도 공공의료, 지방의료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기준을 개선(2021년 11월)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대응,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 신설, 지역보건사업 추진효과, 감염병 치료 등 경제성편익 발굴·추가

□ (기획재정부)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포괄적·항구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 및 유사 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개별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